

눈에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고객의 소중한 마음까지...

한국감정원

수신자 소유자 및 관계인
(경유)

제 목 (왜관석적) 손실보상계획 및 열람통지

1.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오며, 항상 우리 한국감정원(대구보상사업단)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.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한국감정원(대구보상사업단)에서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『왜관-석적간 국도건설공사』(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5-356호)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고,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 등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사업의 개요	사업의 위치	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을 왜관리 ~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
	사업의 종류 및 명칭	도로건설, 왜관-석적간 국도건설공사
	사업규모	경북 칠곡군 왜관을 왜관리 784-175외 1,456필지, 총면적:579,195㎡ (금회보상구간 :칠곡군 왜관을 석적리 산 76-40 외 123필지, 면적:33,835㎡ 그 외 구간 :향후 예산의 확보 시 시행예정)
	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	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(부산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) 보상업무위탁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수탁자 : 한국감정원장 보상사무소 :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☎053-650-67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-36 성안오피스텔 1805호 (지하철2호선 3번출구)
2. 보상대상물건	토지조서, 물건조서 : 별첨(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) ※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재 (http://pcmo.mltm.go.kr/ -> 알림마당 ->공보)	
3. 보상계획열람	① 열람장소 - 현장사무소(계룡건설 :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334-1번지) Tel.054-975-1983 Fax.054-975-1986 - 보상사무소(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) :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-36 성안오피스텔 1805호 053-650-6740 ②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09.06.10(수) ~ 2009.06.24(수) 10:30 ~ 17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 제외) ※ 담당자 현장사무소 근무일시 : 2009.06.18(목) ~ 2009.06.19(금) 10:30~17:00	

※ 담당자 현장사무소 근무일에는 가급적 대구사무소 방문을 삼가바랍니다.

4.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

구 분	예정일정	주 요 내 용
감정평가	2009/06/25 부터 2009/07/24 까지	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”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.
손실보상액 산정 및 통보	2009/07/27 부터 2009/07/31 까지	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	2009/08/01 부터	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(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)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청약하고,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
보상금지급청구 및 지급 방법	2009/08월말 순 부터	보상금지급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청구서상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 흥결이 없고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 될 경우 청구자 개인 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종료 합니다.
수용재결 신청	2009/12월경	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재결신청을 하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합니다.

- ※ ①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**계획 일정**이 다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.
 ②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**토지취득 관련 보상업무 전반적인 사항**은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하며, 편입되고 **남는 잔여지 관련**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요청 시 매수청구 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별 첨 : 소유자별 토지 및 물건조서 1부. 끝.

한 국 감 정 원 장



담당보조 김철홍

담당역 김효영

연구위원 이순도

지점장 전결 06/09
서명철

시행 대구보상사업단(왜관석적)-3335 (2009.06.09.)

우 704-712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-36 성안오피스텔 1805호 / <http://www.kab.co.kr>

전화 053-650-6740 전승 053-650-6746 / k02883@kab.co.kr / 공개